

전라남도

2018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 용역보고서

2018. 6. 22

---

#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용역보고서를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6. 22.

정안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준하

# 목 차

용역보고서.....	1
<b>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b>	<b>3</b>
1. 목포도시가스.....	3
2. 대화도시가스.....	4
3. 전남도시가스.....	5
4. 해양도시가스.....	6
<b>II. 공급비용 산정기준.....</b>	<b>7</b>
1. 총칙.....	7
2. 적정원가의 산정.....	9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1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3
5.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13
<b>II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b>	<b>14</b>
1. 목포도시가스.....	14
2. 대화도시가스.....	24
3. 전남도시가스.....	34
4. 해양도시가스.....	44
<b>IV. 용도별 공급비용.....</b>	<b>54</b>
1. 목포도시가스.....	54
2. 대화도시가스.....	55
3. 전남도시가스.....	56
4. 해양도시가스.....	57
<b>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b>	<b>58</b>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58
2.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61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 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	62
4.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62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64
6.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	65
7.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	67
8.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	68
9. 공급비용 결정 요인에 대한 사후 정산 실시 .....	69
별첨 : 부속명세서 .....	70

## 용역보고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2018년 6월 22일

폐 회계법인(이하 “법인”)은 전라남도와 체결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계약에 따라 목포, 대화, 전남, 해양 도시가스(이하 “회사”)가 2018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당 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도시가스 회사별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제시

- 회사별 도시가스 총공급비용, 적정 투자보수율 및 단위당 공급비용 분석
- 용도별 판매열량, 공급비용 및 대안별 요금적용 사유

### 나. 도시가스 공급열량 산출 및 검토

- 승인된 추정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의 차이 검토
- 2017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승인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과의 차이가  $\pm 1.5\%$ 를 초과한 경우는 정산하여 2018년도 공급비용에 적용

### 다. 현행 공급비용에 대한 적정원가 분석 및 대안제시

- 주택용 기본요금 770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 자기자본 보수율 및 가산 보수율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2018. 3. 30)안 반영
-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의 적정원가 산정 대안제시

### 라. 전라남도의 주택용 동일 요금제 정책의 적정성 판단

### 마. 정부정책 등 반영으로 인한 공급비용 안정성 확보 방안

-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 공급권역별 전·출입 세대수와 이에 따른 전체 비용
  - ㉡ 철거비용 폐지로 인상되는 지역별 공급비용과 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 ㉢ 타 시도 적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 분석 등

- ㉠ 시도별 시설분담금 적용기준
- ㉡ 단위당 공급비용
- ㉢ 산업용 다부제 운영실태 등

- 도시지역임에도 경제성이 낮은 주택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기피에 따른 개선 대안

바. 전라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보급률 향상을 위한 타 시도 적용사례 조사 및 대안 제시

사. 공급비용 결정 요인에 대한 사후 정산 실시

- 감사원이 지적한 시도의 배관투자비 정산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 정산(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열량정산)에 따른 요금의 안정성확보 및 민원 해소 방안 제시

당 법인은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제표, 경영/산업 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과 검토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 제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는 2018년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8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 상의 용역 결과는 용역 기준일 이후의 적용 법규 또는 정책의 변동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용역 기준일 이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갱신할 책임이 없습니다.

정 안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윤 준 하

## 1.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회사가 제시한 2018년의 추정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에 대한 당 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1,610,620	(280,315)	11,330,305	
B. 요금기저	34,582,543	(1,078,469)	33,504,074	
C. 투자보수율	8.09%	-	8.09%	
D. 투자보수	2,797,896	(87,253)	2,710,642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4,408,516	(367,568)	14,040,947	A+D+E
G. 정산금액	381,193	(244,145)	137,048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259,748	(21,841)	237,907	
J. 조정 공급비용	15,049,457	(633,554)	14,415,903	F+G+H+I
K. 추정공급열량(GJ)	5,264,043	-	5,264,043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8589	(0.1204)	2.7386	J÷K

## 2.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7,674,419	(289,622)	7,384,797	
B. 요금기저	10,318,847	(359,969)	9,958,878	
C. 투자보수율	5.46%	-	5.46%	
D. 투자보수	563,357	(19,652)	543,705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8,237,776	(309,275)	7,928,502	A+D+E
G. 정산금액	123,000	(162,545)	(39,545)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254,721	(11,001)	243,720	
J. 조정 공급비용	8,615,498	(482,821)	8,132,677	F+G+H+I
K. 추정공급열량(GJ)	7,749,000	-	7,749,000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1.1118	(0.0623)	1.0495	J÷K

### 3.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23,425,389	(2,863,152)	20,562,237	
B. 요금기저	46,940,071	(2,385,246)	44,554,825	
C. 투자보수율	8.18%	-	8.18%	
D. 투자보수	3,838,826	(195,069)	3,643,757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27,264,215	(3,058,221)	24,205,994	A+D+E
G. 정산금액	(298,861)	(357,545)	(656,406)	
H.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414,388	(55,477)	358,911	
J. 조정 공급비용	27,379,742	(3,471,242)	23,908,499	F+G+H+I
K. 추정공급열량(GJ)	11,533,170	-	11,533,170	
<b>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b>	<b>2.3740</b>	<b>(0.3010)</b>	<b>2.0730</b>	<b>J÷K</b>

4.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1,661,708	(568,310)	11,093,397	
B. 요금기저	49,340,325	(631,755)	48,708,571	
C. 투자보수율	8.46%	-	8.46%	
D. 투자보수	4,173,945	(53,443)	4,120,501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5,835,652	(621,753)	15,213,899	A+D+E
G. 정산금액	(353,114)	(42,460)	(395,574)	
H.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141,255	(1,029)	140,226	
J. 조정 공급비용	15,623,793	(665,243)	14,958,551	F+G+H+I
K. 추정공급열량(GJ)	5,907,466	-	5,907,466	
<b>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b>	<b>2.6448</b>	<b>(0.1126)</b>	<b>2.5321</b>	<b>J÷K</b>

##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당 법인은 전남도시가스사가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018.3.30 개정) (이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총칙

#### 1) 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시. 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시. 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업자별로 산정한다.
- ⑥ 시. 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시. 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 2) 산정기준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 다만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차이를 다음연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산정기준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 계산을 위한 제반 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수의계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동일한 기관이 3년 연속 공급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⑥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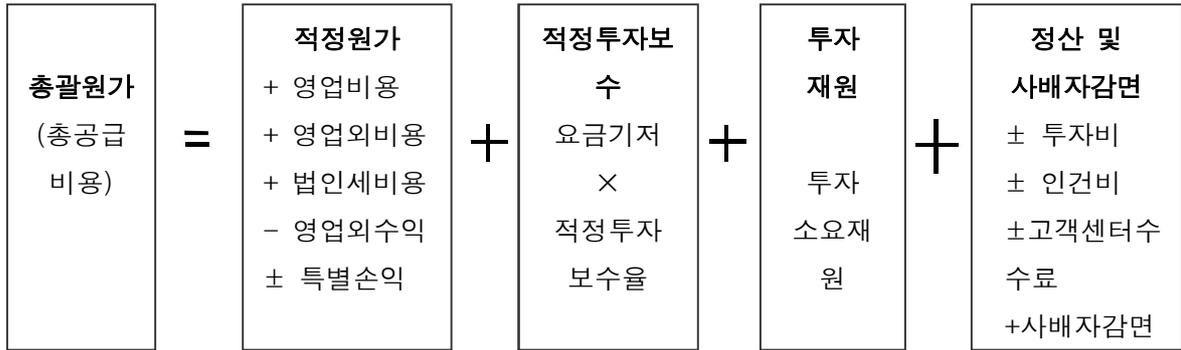
4) 산정기준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5) 산정기준 제 5 조의 2 (판매열량 차이의 정산)

-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 (이하“판매열량 차이”라 한다)가  $\pm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한다.
-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량에 승인된 사용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다.

6) 총괄원가의 구성



2. 적정원가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법인세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로 산정한다.

2) 산정기준 제 7 조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 건 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i)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ii)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

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 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3) 산정기준 제 7 조의 2 (영업비용 등의 정산)

제 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제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하여 추정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추정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

4) 산정기준 제 8 조 (영업외비용)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5) 산정기준 9 조 (영업외수익)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

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 1) 산정기준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산정기준 제 12 조 (요금기저)

-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희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 3) 산정기준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
- ④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액 + 순무형자산액 + 평균건설중인자산 + 운전자금 2개월분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 × 타인자본 구성비

### 3) 산정기준 제 14 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 ①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사업자는 ①항의 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 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 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킨다.
- ③ ②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제12조 요금기저에 따른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②항의 공사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되 ③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 ⑤ ③항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 받은 사업자가 ④의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단, 굴착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 도지사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 1) 산정기준 제 15 조 (요금의 책정)

-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시. 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부제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2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사용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은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절한 원가를 부과하여야 한다.

##### 2) 산정기준 제 16 조 (도시가스 요금수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은 원재료비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한다.

#### 5.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 1) 산정기준 제 17 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 ① 시. 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
- ② 시. 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Ⅲ.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 1. 목포도시가스

##### 1) 적정원가

목포도시가스사는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목포, 무안, 영암, 강진 4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10,839,226	(256,286)	10,582,941
인건비	3,562,008	(98,283)	3,463,725
감가상각비	3,071,741	(177,362)	2,894,379
기타영업비용	4,205,477	19,359	4,224,836
(B)영업외비용	11,158	-	11,158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760,236	(24,029)	736,206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11,610,620	(280,315)	11,330,305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11,610,620	(280,315)	11,330,305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b>(J)적정원가(H+I)</b>	<b>11,610,620</b>	<b>(280,315)</b>	<b>11,330,305</b>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2.6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2,806,878	(82,958)	2,723,920
상여금	262,360	(5,247)	257,113
제수당	217,839	(4,357)	213,482
퇴직급여	271,931	(5,721)	266,210
잡급	3,000	-	3,000
합 계	3,562,008	(98,283)	3,463,725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39,846	(8,068)	31,778
건축물	6,029	(784)	5,245
기계장치	8,443	(494)	7,949
공급설비	2,804,949	(213,905)	2,591,044
차량운반구	42,860	(9,190)	33,670
공구와기구	23,297	(614)	22,683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기타의 유형자산	35,913	(10,835)	25,077
무형자산	110,404	66,529	176,933
합 계	3,071,741	(177,362)	2,894,379

#### 다. 기타영업비용

#####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355,491	(18,576)	336,915
여비교통비	87,021	(223)	86,798
차량유지비	87,172	(223)	86,949
통신비	67,652	(2,471)	65,181
수도광열비	74,829	(1,168)	73,661
소모품비	220,084	(21,529)	198,555
세금과공과	434,646	(2,949)	431,697
지급임차료	56,594	(1,299)	55,295
운반비	135,301	(345)	134,956
수선비	341,931	(44,842)	297,089
보험료	99,881	(112)	99,769
접대비	50,046	(127)	49,919
광고선전비	7,677	(18)	7,659
교육훈련비	15,300	(1,886)	13,414
도서인쇄비	59,448	(629)	58,819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지급수수료	635,818	(4,911)	630,907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1,475,984	120,665	1,596,649
잡비	602	-	602
계	4,205,477	19,359	4,224,836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11,158	-	11,158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3,470,829	(109,119)	3,361,710
②유효법인세율	21.37%	(0.02%)	21.35%

③세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2,729,246	(85,113)	2,644,134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741,583	(24,006)	717,576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18,653	(23)	18,630
<b>법인세비용(④+⑤)</b>	<b>760,236</b>	<b>(24,029)</b>	<b>736,206</b>

##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742,820	(461,393)	1,281,427
유형자산	32,308,105	(617,076)	31,691,029
무형자산	491,729	-	491,729
임차보증금	39,889	-	39,889
<b>합 계</b>	<b>34,582,543</b>	<b>(1,078,469)</b>	<b>33,504,074</b>

###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30,931,756	(649,535)	30,282,221
당기증가 계획치(*)	2,638,907	(63,041)	2,575,866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961,337	(243,890)	2,717,447
(B)당기말 미상각잔액	30,609,326	(468,686)	30,140,640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C)평균 미상각잔액[(A+B)÷2]	30,770,541	(559,112)	30,211,430
(D)토지재 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1,537,564	(57,965)	1,479,599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b>유형자산계[C-D+E-F]</b>	<b>32,308,105</b>	<b>(617,077)</b>	<b>31,691,029</b>

(\*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2,533,190천원입니다.

####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525,059	-	525,059
당기증가 계획치	110,273	-	110,273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76,933	-	176,933
(B)당기말 미상각잔액	458,399	-	458,399
(C)평균 미상각잔액[(A+B)÷2]	491,729	-	491,729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b>무형자산계(C-D)</b>	<b>491,729</b>	<b>-</b>	<b>491,729</b>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39,889	-	39,889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39,889	-	39,889
(C)평균 잔액 $[(A+B) \div 2]$	39,889	-	39,889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b>임차보증금계(C-D)</b>	<b>39,889</b>	<b>-</b>	<b>39,889</b>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5.46%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1.91%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 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40,268,597	-	40,268,597
타인자본	4,671,595	-	4,671,595
자기자본수익률	5.46%	-	5.46%
타인자본수익률	1.91%	-	1.91%
가중평균투자보수율	5.09%	-	5.09%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b>투자보수율</b>	<b>8.09%</b>	<b>-</b>	<b>8.09%</b>

#### 4) 투자자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 5) 정산금액

#####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363,228	(244,145)	119,083
인건비	(96,441)	-	(96,441)
고객센터수수료	39,775	-	39,775
열량정산	74,631	-	74,631
정산금액합계	381,193	(244,145)	137,048

#####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은 총 357,248천원이나 당기에 119,083천원 반영하였으며, 238,165천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① 추정판매량	5,129,475	-	5,129,475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㉞ 실제판매량	4,976,708	-	4,976,708
1-㉟ 허용오차율(±1.5%)	1.50%	-	1.50%
1-㊱ 판매량차이(㉞-㉟)	152,767	-	152,767
1-㊲ 허용오차범위(㉞×㉟)	74.651	-	74.651
1-㊳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74.631	-	74.631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74.631	-	74.631

####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장애인	2,348	91,171	
기초수급자 등	2,793	93,297	
차상위	1,215	23,659	
다자녀	2,832	29,779	
합 계	9,188	237,907	

##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8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수정후)
공급열량	4,863,602	5,029,105	4,976,708	5,264,043
증가열량	218,509	165,503	(52,397)	287,335
증 가 율	4.70%	3.40%	(1.04%)	5.77%

(\*) 당기 추정열량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817,243	745,579	564,310	440,075	2,567,207

###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350,556	258,659	251,220	223,749	253,251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313,984	417,417	628,000	2,696,836	

###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567,207\text{GJ} + 2,696,836\text{GJ} = 5,264,043\text{GJ}$$

## 2. 대화도시가스

### 1) 적정원가

대화도시가스사는 여수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여수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7,543,728	(284,079)	7,259,650
인건비	3,913,450	(771,332)	3,142,118
감가상각비	689,690	413,547	1,103,237
기타영업비용	2,940,588	73,706	3,014,294
(B)영업외비용	-	-	-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130,691	(5,544)	125,147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7,674,419	(289,622)	7,384,797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7,674,419	(289,622)	7,384,797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b>(J)적정원가(H+I)</b>	<b>7,674,419</b>	<b>(289,622)</b>	<b>7,384,797</b>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2.6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2,866,384	(771,332)	2,095,052
상여금	581,580	-	581,580
제수당	210,270	-	210,270
퇴직급여	255,216	-	255,216
합 계	3,913,450	(771,332)	3,142,118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 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48,036	(12,979)	35,057
건축물	132	118	250
기계장치	739	657	1,396
공급설비	532,647	341,321	873,968
기타의 유형자산	108,136	84,430	192,566
합 계	689,690	413,547	1,103,237

#### 다. 기타영업비용

#####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326,570	136,097	462,667
여비교통비	5,855	(44)	5,811
차량유지비	104,951	(782)	104,169
통신비	47,790	(356)	47,434
전력비	11,173	(83)	11,090
소모품비	185,809	(25,609)	160,200
세금과공과	248,125	(1,849)	246,276
수선비	200,000	(62,400)	137,600
보험료	23,510	(175)	23,335
접대비	8,822	(66)	8,756
경조비	2,193	(16)	2,177
교육훈련비	3,458	(26)	3,432
도서인쇄비	62,073	(463)	61,610
지급수수료	690,188	(47,511)	642,677
사무용품비	5,330	(39)	5,291
대손상각비	57,473	(428)	57,045
고객센터수수료	954,236	77,480	1,031,716
잡비	3,030	(22)	3,008
계	<b>2,940,588</b>	<b>73,706</b>	<b>3,014,294</b>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	-	-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694,048	(25,196)	668,852
②유효법인세율	18.83%	(0.12%)	18.71%
③세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563,357	(19,652)	543,705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130,691	(5,544)	125,147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	-	-
<b>법인세비용(④+⑤)</b>	<b>130,691</b>	<b>(5,544)</b>	<b>125,147</b>

##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974,134	(14,095)	960,039
유형자산	9,311,489	(345,874)	8,965,615
무형자산	-	-	-
임차보증금	33,224	-	33,224
<b>합 계</b>	<b>10,318,847</b>	<b>(359,969)</b>	<b>9,958,878</b>

###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7,700,362	-	7,700,362
당기증가 계획치(*)	3,653,498	(891,258)	2,762,24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1,302,748	(199,511)	1,103,237
(B)당기말 미상각잔액	10,051,112	(691,747)	9,359,365
(C)평균 미상각잔액[(A+B)÷2]	8,875,737	(345,875)	8,529,863
(D)토지재 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435,752	-	435,752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b>유형자산계[C-D+E-F]</b>	<b>9,311,489</b>	<b>(345,875)</b>	<b>8,965,615</b>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1,312,240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32,100	-	32,100
당기증가 계획치	2,247	-	2,247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34,347	-	34,347
(C)평균 잔액[(A+B)÷2]	33,224	-	33,224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b>임차보증금계(C-D)</b>	<b>33,224</b>	<b>-</b>	<b>33,224</b>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5.46%이며, 타인자본은 없으므로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없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또한 가산하지 않고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21,705,080	-	21,705,080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5.46%	-	5.46%
타인자본수익률	-	-	-
가중평균투자보수율	5.46%	-	5.46%
투자보수율가산	-	-	-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적정투자보수율	5.46%	-	5.46%

#### 4) 투자재원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 시·도시자가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대화도시가스사의 경우 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배관 투자계획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보급률 증대를 감안하고 공급비용의 급격한 변동 및 인접 지역과의 과도한 공급비용 차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까지 투자재원을 반영한 바 투적된 투자재원과 투자재원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에 반영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투자재원	사용금액	잔액
2009년	2,284,176	1,104,441	1,179,735
2010년	1,759,398	191,697	1,567,701
2011년	1,500,000	508,777	991,223
2012년	1,920,100	2,146,592	(226,492)
2013년	4,000,000	2,121,655	1,878,345
2014년	7,174,014	2,087,351	5,086,663
2015년	4,737,000	7,191,816	(2,454,816)
2016년	2,316,500	3,262,927	(946,427)
2017년	900,000	2,309,631	(1,409,631)
합계	<b>26,591,188</b>	<b>20,924,887</b>	<b>5,666,301</b>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공급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관투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수요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배관공사비를 일부 부담(시설분담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투자보수가 산정되는 요금기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할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 5) 정산금액

###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315,542	(162,545)	152,997
인건비	411,482	-	411,482
고객센터수수료	49,749	-	49,749
열량정산	(653,773)	-	(653,773)
정산금액합계	123,000	(162,545)	(39,545)

###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 중 차기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 다.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① 추정판매량	5,768,701	-	5,768,701
1-② 실제판매량	6,205,528	-	6,205,528
1-③ 허용오차율(±1.5%)	1.50%	-	1.50%
1-④ 판매량차이(②-①)	436,827	-	436,827
1-⑤ 허용오차범위(②×③)	93,083	-	93,083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㉞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653,773)	-	(653,773)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653,773)	-	(653,773)

####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장애인	2,107	102,176	
기초수급자 등	2,260	94,908	
유공자	30	1,629	
차상위	709	16,521	
다자녀	2,416	28,486	
<b>합 계</b>	<b>7,522</b>	<b>243,720</b>	

##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7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수정후)
공급열량	5,638,504	5,760,747	6,205,528	7,749,000
증가열량	-1,328,221	122,135	444,781	1,543,472
증 가 율	-19.07%	2.17%	7.72%	24.87%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903,090	865,200	773,316	600,103	3,141,709

###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615,472	579,332	552,021	540,336	559,695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454,718	572,096	733,621	4,607,291	

###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3,141,709\text{GJ} + 4,607,291\text{GJ} = 7,749,000\text{GJ}$$

### 3. 전남도시가스

#### 1) 적정원가

전남도시가스사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동일 공급 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6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급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22,141,285	(2,734,949)	19,406,336
인건비	6,209,828	(721,367)	5,488,461
감가상각비	4,237,071	(137,201)	4,099,870
기타영업비용	11,694,386	(1,876,381)	9,818,005
(B)영업외비용	230,000	(74,000)	156,000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1,054,104	(54,203)	999,901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23,425,389	(2,863,152)	20,562,237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23,425,389	(2,863,152)	20,562,237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b>(J)적정원가(H+I)</b>	<b>23,425,389</b>	<b>(2,863,152)</b>	<b>20,562,237</b>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2.6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4,084,267	(390,426)	3,693,842
상여금	1,352,288	(170,405)	1,181,883
제수당	223,776	(28,199)	195,578
퇴직급여	533,231	(130,288)	402,943
잡급	16,266	(2,050)	14,216
합 계	6,209,828	(721,367)	5,488,461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81,726	(1,875)	79,851
건축물	413	-	413
공급설비	3,527,806	(89,326)	3,438,480
차량운반구	138,677	-	138,677
기타의 유형자산	397,736	(46,000)	351,736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무형자산	90,713	-	90,713
합 계	4,237,071	(137,201)	4,099,870

#### 다. 기타영업비용

#####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1,401,682	(72,829)	1,328,852
여비교통비	110,205	(29,855)	80,351
차량유지비	186,230	(34,050)	152,179
통신비	367,688	(61,314)	306,374
수도광열비	120,830	(449)	120,382
소모품비	243,141	(140,913)	102,228
세금과공과	454,952	(88,663)	366,289
임차료	177,062	(709)	176,353
수선비	1,274,773	(420,741)	854,032
보험료	58,043	(7,322)	50,721
접대비	140,897	(52,232)	88,665
회의비	35,239	(16,539)	18,700
광고선전비	20,730	(12)	20,718
교육훈련비	79,543	(41,121)	38,421
도서인쇄비	61,735	(45,824)	15,911
지급수수료(*)	3,640,916	(698,456)	2,942,460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고객센터수수료	2,361,149	-	2,361,149
계량기교체비	882,727	(158,200)	724,527
대손상각비	44,603	-	44,603
잡비	32,240	(7,150)	25,090
계	11,694,386	(1,876,381)	9,818,005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230,000	(74,000)	156,000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4,818,322	(246,274)	4,572,048
②유효법인세율	21.54%	(0.02%)	21.52%
③세 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3,780,291	(192,094)	3,588,197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1,038,031	(54,180)	983,851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16,073	(23)	16,050
<b>법인세비용(④+⑤)</b>	<b>1,054,104</b>	<b>(54,203)</b>	<b>999,901</b>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2,957,167	(450,681)	2,506,486
유형자산	43,375,012	(1,934,565)	41,440,446
무형자산	204,683	-	204,683
임차보증금	403,210	-	403,210
<b>합 계</b>	<b>46,940,071</b>	<b>(2,385,246)</b>	<b>44,554,825</b>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0,736,622	(41,865)	40,694,757
당기증가 계획치(*)	8,456,276	(3,468,430)	4,987,846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4,146,359	(137,201)	4,009,158
(B)당기말 미상각잔액	45,046,539	(3,373,094)	41,673,445
(C)평균 미상각잔액[(A+B)÷2]	42,891,581	(1,707,481)	41,184,100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483,431	(227,085)	256,346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b>유형자산계[C-D+E-F]</b>	<b>43,375,012</b>	<b>(1,934,566)</b>	<b>41,440,446</b>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3,607,463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229,519	-	229,519
당기증가 계획치	41,040	-	41,04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90,713	-	90,713
(B)당기말 미상각잔액	179,846	-	179,846
(C)평균 미상각잔액[(A+B)÷2]	204,683	-	204,683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b>무형자산계(C-D)</b>	<b>204,683</b>	<b>-</b>	<b>204,683</b>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323,210	-	323,210
당기증가 계획치	160,000	-	16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483,210	-	483,210
(C)평균 잔액[(A+B)÷2]	403,210	-	403,210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b>임차보증금계(C-D)</b>	<b>403,210</b>	<b>-</b>	<b>403,210</b>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5.46%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1.68%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 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47,850,303	-	47,850,303
타인자본	3,844,899	-	3,844,899
자기자본수익률	5.46%	-	5.46%
타인자본수익률	1.68%	-	1.68%
가중평균투자보수율	5.18%	-	5.18%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b>투자보수율</b>	<b>8.18%</b>	<b>-</b>	<b>8.18%</b>

#### 4) 투자자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 5) 정산금액

#####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127,065)	-	(127,065)
인건비	(184,913)	-	(184,913)
고객센터수수료	13,118	-	13,118
열량정산	-	-	(357,545)
<b>정산금액합계</b>	<b>(298,861)</b>	<b>(357,545)</b>	<b>(656,406)</b>

#####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은 총 381,195천원이나 당기에 127,065천원 반영하였으며, 254,130천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인건비의 정산대상 금액은 554,739천원이나 당기에 184,913천원 반영하였으며, 369,826천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고객센터수수료 정산금액은 39,353천원이나 당기에 13,118천원 반영하였으며, 26,235천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9,904,430	-	9,904,430
1-㉡ 실제판매량	10,116,659	-	10,116,659
1-㉢ 허용오차율(±1.5%)	1.50%	-	1.50%
1-㉣ 판매량차이(㉡-㉠)	212,229	-	212,229
1-㉤ 허용오차범위(㉡×㉢)	151,750	-	151,750
1-㉥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1,072,635)	-	(1,072,635)
3. 이연 대상금액	(715,090)	-	(715,090)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357,545)	-	(357,545)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1,845	87,949	
장애인, 유공자	2,554	131,910	
차상위	854	32,459	
다자녀	3110	89,787	
사회복지시설	182	16,807	
<b>합 계</b>	<b>8,545</b>	<b>358,911</b>	

##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8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급열량	8,558,659	9,254,024	10,116,659	11,533,170
증가열량	-360,858	695,365	862,635	1,416,511
증 가 율	-4.05%	8.12%	9.32%	14.00%

(\*) 당기 추정열량은 산업용 물량의 증가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1,394,244	1,255,161	1,115,451	886,630	4,651,486

###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689,812	721,498	736,240	667,462	735,021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740,301	1,147,957	1,443,394	6,881,684	

###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4,651,486\text{GJ} + 6,881,684\text{GJ} = 11,533,170\text{GJ}$$

#### 4. 해양도시가스

##### 1) 적정원가

해양도시가스사는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해남군 및 장흥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8개 지역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8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10,402,189	(553,236)	9,848,953
인건비	2,605,503	(69,394)	2,536,109
감가상각비	3,396,211	6,850	3,403,061
기타영업비용	4,400,475	(490,692)	3,909,783
(B)영업외비용	88,852	-	88,852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1,170,666	(15,074)	1,155,593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11,661,708	(568,310)	11,093,397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11,661,708	(568,310)	11,093,397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b>(J)적정원가(H+I)</b>	<b>11,661,708</b>	<b>(568,310)</b>	<b>11,093,397</b>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2.6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1,256,299	(12,217)	1,244,082
상여금	1,076,791	(39,689)	1,037,102
제수당	32,663	(4,000)	28,663
퇴직급여	239,750	(13,488)	226,262
합 계	2,605,503	(69,394)	2,536,109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33,715	(218)	33,497
구축물	675	-	675
공급설비	3,137,402	18,193	3,155,595
기타의 유형자산	116,878	(2,820)	114,058
무형자산	107,541	(8,305)	99,236
합 계	3,396,211	6,850	3,403,061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467,629	(20,326)	447,303
여비교통비	79,179	(10,747)	68,432
차량유지비	215,666	(4,855)	210,811
통신비	99,434	(7,727)	91,707
수도광열비	18,400	(5,066)	13,334
소모품비	23,121	(2,967)	20,154
세금과공과	334,915	(26,980)	307,935
임차료	50,352	(5,418)	44,934
보험료	9,277	(3,232)	6,045
광고선전비	39,218	(10,719)	28,499
교육훈련비	15,609	(9)	15,600
지급수수료	1,066,155	(102,551)	963,604
고객센터수수료	1,739,188	(253,100)	1,486,088
자재비	242,332	(36,996)	205,336
<b>계</b>	<b>4,400,475</b>	<b>(490,692)</b>	<b>3,909,783</b>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

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88,852	-	88,852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5,344,611	(68,517)	5,276,094
②유효법인세율	21.90%	-	21.90%
③세 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4,173,945	(53,443)	4,120,501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1,170,666	(15,074)	1,155,593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	-	-
<b>법인세비용(④+⑤)</b>	<b>1,170,666</b>	<b>(15,074)</b>	<b>1,155,593</b>

##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167,663	(93,348)	1,074,315
유형자산	47,724,677	(509,341)	47,215,336
무형자산	334,185	(29,065)	305,120
임차보증금	113,800	-	113,800
<b>합 계</b>	<b>49,340,325</b>	<b>(631,755)</b>	<b>48,708,571</b>

###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5,153,147	-	45,153,147
당기증가 계획치(*)	5,569,723	650,546	6,220,26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3,288,670	15,155	3,303,825
(B)당기말 미상각잔액	47,434,200	635,391	48,069,591
(C)평균 미상각잔액[(A+B)÷2]	46,293,674	317,695	46,611,368
(D)토지재평가차익	10,377	-	10,377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1,441,380	(827,035)	614,345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유형자산계[C-D+E-F]	47,724,677	(509,341)	47,215,336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6,095,829천원입니다.

####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1,559,490	-	1,559,490
당기증가 계획치	1,418,510	(388,510)	1,03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628,893	(48,564)	580,329
(B)당기말 미상각잔액	2,349,107	(339,946)	2,009,161
(C)평균 미상각잔액[(A+B)÷2]	1,954,299	(169,973)	1,784,326
(D)비가스 사업용자산	1,620,114	(140,908)	1,479,206
<b>무형자산계(C-D)</b>	<b>334,185</b>	<b>(29,065)</b>	<b>305,120</b>

####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295,000	-	295,000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295,000	-	295,000
(C)평균 잔액[(A+B)÷2]	295,000	-	295,000
(D)비가스 사업용자산	181,200	-	181,200
<b>임차보증금계(C-D)</b>	<b>113,800</b>	<b>-</b>	<b>113,800</b>

###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5.46%이며, 타인자본은 없으므로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없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111,802,303	-	111,802,303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5.46%	-	5.46%
타인자본수익률	-	-	-
가중평균투자보수율	5.46%	-	5.46%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투자보수율	<b>8.46%</b>	-	<b>8.46%</b>

### 4) 투자재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 5) 정산금액

####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543,606	-	543,606
인건비	(46,003)	-	(46,003)
고객센터수수료	100,031	(42,460)	57,571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열량정산	(950,748)	-	(950,748)
<b>정산금액합계</b>	<b>(353,114)</b>	<b>(42,460)</b>	<b>(395,574)</b>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는 금년도에 모두 정산되어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는 금년도에 모두 정산되어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5,388,062	-	5,388,062
1-㉡ 실제판매량	5,443,000	-	5,443,000
1-㉢ 허용오차율(±1.5%)	1.50%	-	1.50%
1-㉣ 판매량차이(㉡-㉠)	54,938	-	54,938
1-㉤ 허용오차범위(㉡×㉢)	81,645	-	81,645
1-㉦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950,748)	-	(950,748)
5. 금년 정산반영액(2.-3.+4.)	(950,748)	-	(950,748)

6)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2,721	97,977.37	
차상위	554	10,271	
다자녀	1,842	16,621	
사회복지시설	136	15,357	
<b>합 계</b>	<b>5,252</b>	<b>140,226</b>	

##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8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급열량	4,488,117	5,130,749	5,443,000	5,907,466
증가열량	358,278	642,632	312,251	464,466
증 가 율	8.67%	14.32%	6.09%	8.53%

(\*) 당기 추정열량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707,152	657,985	615,463	512,465	2,493,065

###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444,648	397,886	385,978	370,001	359,369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376,230	496,490	583,799	3,414,401	

###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493,065\text{GJ} + 3,414,401\text{GJ} = 5,907,466\text{GJ}$$

#### IV. 용도별 공급비용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목포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2,760,733	3.0342	3.0342	-	3.1238	2.95%
영업용1	471,624	3.4420	3.9420	14.53%	3.5437	2.95%
영업용2	110,893	3.3758	3.4369	1.81%	3.4755	2.95%
업무난방용	80,480	2.9345	3.4345	17.04%	3.0212	2.95%
냉난방공조용	170,322	1.6301	1.6912	3.75%	1.6783	2.95%
산업용1	1,299,359	1.4450	1.5061	4.23%	1.4877	2.95%
산업용2	95,849	0.4662	0.5273	13.11%	0.4800	2.95%
수송용	274,783	0.4906	0.4906	-	0.4906	-
<b>합계</b>	<b>5,264,043</b>	<b>2.6551</b>	<b>2.7386</b>	<b>3.14%</b>	<b>2.7386</b>	<b>3.14%</b>

\* 산업용2 요금은 월42.47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 1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주택용, 수송용을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인상분을 용도별로 개별 인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안2: 수송용만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인상분을 각 부분 주체에 동일한 비율인 2.9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대화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2,148,108	2.0121	2.0121	-	2.0121	-
영업용1	235,957	1.5818	1.5818	-	1.5818	-
영업용2	189,162	1.5848	1.5848	-	1.5848	-
업무난방용	104,741	1.5848	1.5848	-	1.5848	-
냉난방공조용	94,150	1.0795	1.0795	-	1.0795	-
산업용1	2,492,767	1.1355	0.6896	-39.27%	0.6896	-39.27%
산업용2	1,987,791	-	0.0465	-	0.0465	-
열병합용	23,204	1.1304	1.1304	-	1.1304	-
열전용설비	61,777	1.1304	1.1304	-	1.1304	-
수송용	411,343	0.4906	0.4906	-	0.4906	-
<b>합계</b>	<b>7,749,000</b>	<b>1.5348</b>	<b>1.0495</b>	<b>-31.62%</b>	<b>1.0495</b>	<b>-31.62%</b>

\* 산업용2 요금은 월212.35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대화도시가스의 경우 대안1과 대안2 모두 타 용도의 단가는 동결하였으며 인하효과를 산업용 1에만 배부하였습니다. 대화도시가스의 경우 인하요인이 산업용 열량의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대안1: 타 용도의 단가는 모두 동결하였으며 인하효과를 산업용 1에만 배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타 용도의 단가는 모두 동결하였으며 인하효과를 산업용 1에만 배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3. 전남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3,652,531	3.0342	2.7843	-8.23%	2.7843	-8.23%
영업용1	398,355	3.6307	3.3317	-8.23%	3.3317	-8.23%
영업용2	89,340	3.4991	3.2110	-8.23%	3.2110	-8.23%
업무난방용	133,673	3.6462	3.3460	-8.23%	3.3460	-8.23%
냉난방공조용	150,305	1.9794	1.8164	-8.23%	1.8164	-8.23%
산업용1	1,184,136	2.1306	1.9552	-8.23%	1.9552	-8.23%
산업용2	674,015	1.8981	1.7418	-8.23%	1.7418	-8.23%
산업용3	-	1.6810	1.5426	-8.23%	1.5426	-8.23%
산업용4	4,795,303	1.4332	1.3152	-8.23%	1.3152	-8.23%
연료전지	152,991	0.7838	0.7193	-8.23%	0.7193	-8.23%
수송용	302,521	0.4906	0.4906	-	0.4906	-
<b>합계</b>	<b>11,533,170</b>	<b>2.3638</b>	<b>2.0730</b>	<b>12.30%</b>	<b>2.0730</b>	<b>12.30%</b>

\* 산업용2 요금은 월42.47 TJ 초과시, 산업용3 요금은 127.41초과시, 산업용4 요금은 297.29초과시 적용됩니다.

\*\* 산업용4는 공급권역내 동일법인일 경우, 통합열량으로 해당 부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대안1과 대안2 모두 수송용은 동결하고 차이를 기타용도에 정률 배부 하였습니다.

대안1 : 수송용은 동결하고 차이를 각 용도에 동일한 비율(8.23%)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수송용은 동결하고 차이를 각 용도에 동일한 비율(8.23%)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4. 해양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1,472,875	3.0342	3.0342	-	3.0751	1.35%
영업용1	275,309	4.2931	4.3781	1.98%	4.3510	1.35%
영업용2	36,824	3.3013	3.3667	1.98%	3.3458	1.35%
업무난방용	181,657	3.7513	3.8256	1.98%	3.8019	1.35%
냉난방공조용	40,790	1.7517	1.7864	1.98%	1.7753	1.35%
산업용1	2,029,683	2.1801	2.2233	1.98%	2.2095	1.35%
산업용2	1,150,386	1.5260	1.5562	1.98%	1.5466	1.35%
열병합용	683	1.8768	1.9140	1.98%	1.9021	1.35%
열전용설비	449,304	2.9411	2.9993	1.98%	2.9808	1.35%
수송용	269,955	0.4906	0.4906	-	0.4906	-
<b>합계</b>	<b>5,907,466</b>	<b>2.5001</b>	<b>2.5321</b>	<b>1.28%</b>	<b>2.5321</b>	<b>1.28%</b>

\* 산업용2 요금은 월42.47 TJ 초과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안1: 주택용과 수송용을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용도별 단가는 동일한 비율(1.98%)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수송용을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용도별 단가는 동일한 비율(1.35%)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중점검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 3항 1호에 따라 산정된 주택용 기본요금 산정내역과 현행기본요금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공급관감가상각비	956,281	499,199	729,669	443,779
검침비	335,902	212,318	422,507	499,694
송달비	172,370	123,246	64,932	117,149
고지서발행비	39,991	47,215	28,068	12,993
지로수수료	172,604	87,256	145,518	131,664
안전점검비	509,205	298,194	429,764	653,201
계량기교체비	408,919	351,365	1,145,136	352,201
합계	2,595,272	1,618,792	2,965,594	2,210,681
수용가수(세대)	122,073	84,936	146,091	76,589
기본요금 산정액(원)	1,772	1,588	1,692	2,405
현재 기본요금(원)	770	770	770	770
현재요금 대비 수준	230%	206%	220%	312%

(자료 : 회사제시 및 정안회계법인 분석)

현재 적용되는 기본요금 대비 산정된 요금 수준은 각 사별로 최저 206% ~ 최고 312%로 4개사 모두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및 평균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서울특별시	서울 5 사	1,000	1.2219
경기도	삼천리외	850	1.5199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인천광역시	인천외	840	1.5465
부산시	부산	900	2.2311
대구시	대성	775	2.3019
광주시	해양	750	2.3213
대전시	충남	850	2.9951
울산시	경동	778	1.8941
세종시	충부	760	2.1793
강원 춘천시	강원	950	3.2774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950	2.6323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	950	4.7791
강원 평창시	명성	950	3.3106
충북 청주시	충청ES	950	2.6184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950	3.0022
충남 천안시	충부	820	2.7026
충남 서산시	서해	820	2.3599
전북 전주시	전북	750	2.1077
전북 군산시	군산	750	2.4633
전북 익산시	전북ES	750	3.2709
전남 목포시	목포	770	3.0342
전남 순천시	전남	770	3.0342
전남 여수시	대화	770	2.0121
전남 나주시	해양	770	3.0342
경북 구미시	영남ES	750	2.4816
경북 포항시	영남ES	750	2.5065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	2.5792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750	3.3072
경남 창원시	경남	850	2.6926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1,100	2.9931
경남 양산시	경동	850	2.6292
<b>평 균</b>		<b>838</b>	<b>2.6142</b>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역의 기본요금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기본요금의 단순평균인 838원보다 68원이 낮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들의 경우 인구수와 인구집적도가 높아 보급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인상 필요성이 없지만, 인구집적도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 보급률 증대를 위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성 확보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국 기본요금 평균 838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산악지형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강원도와 유사한 보급률을 나타내는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위: 원, 세대)

지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1,000	98.57%	4,159,785	4,220,082	
인천광역시	840	91.87%	1,092,226	1,188,917	
경기도	850	87.57%	4,493,608	5,131,379	
수도권 소계		92.46%	9,745,619	10,540,378	
부산광역시	900	89.93%	1,319,756	1,467,555	
대구광역시	775	95.65%	962,963	1,006,753	
광주광역시	750	99.27%	588,515	592,818	
대전광역시	850	94.60%	581,453	614,639	
울산광역시	778	93.15%	427,149	458,547	
세종특별자치시	760	81.42%	89,146	109,490	
강원도	950	45.35%	317,565	700,265	
충청북도	950	65.34%	452,222	692,140	
충청남도	820	64.52%	595,864	923,499	
전라북도	750	66.87%	533,541	797,916	
<b>전라남도</b>	<b>770</b>	<b>47.18%</b>	<b>401,701</b>	<b>851,376</b>	

지 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경상북도	750	62.14%	741,523	1,193,261	
경상남도	933	68.52%	963,437	1,406,011	
제주특별자치도	-	9.19%	25,556	278,203	
지방 소계		72.12%	8,000,391	11,092,473	
전국 합계		82.03%	17,746,010	21,632,851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서 전체 세대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요가수는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상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내륙과 달리 LPG+Air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라남도 전체의 주택용 수요가수는 총 401,701 세대로 기본요금 1원의 증가는 총 공급비용의 회수에 있어 연간 4,820천원 (=401,701 세대 x 1원 x 12개월)의 증가에 불과하며, 전라남도 주택용 수요가 중 월 사용량이 없어 기본요금만을 부담하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주택용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가의 요금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전국 최하위 보급률 수준인 전라남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770원인 기본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발생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사용량 요금의 인상폭을 낮추는 한편 전국 최저 수준의 보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독려하는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에너지 사용 편리성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2.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도 2018년 1월에는 최초 물량 공급되었음)에 대한 별도 요금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투자비와 발생원가가 구분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증분(marginal) 개념에 따라 기존 공급권역 외에 신규 공급권역 공급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지역의 경우 배관 투자비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발생원가는 신규 공급 초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후 충분한 수요 증가가 있을 때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통 배관이나 공급시설 역시 합리적 배부기준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규 권역 추가 시 마다 기본적인 인력과 자원은 소요되는데 반해 초기 판매량은 적을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 사업자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의 추가적 민원만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투자비 및 제반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보성군만을 별도의 공급비용 산정 시 2017년도 용역 결과 24.9원/MJ로 2016년도 전남도시가스 요금대비 822%가 높으며, 고흥군만을 별도의 공급비용 산정 시 2017년도 용역 결과 19.4원/MJ로 2016년도 전남도시가스 요금대비 63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로 금년 용역결과 보성군은 32.0원/MJ로 현 도시가스 요금대비 1353%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흥군은 9.5원/MJ로 현 도시가스 요금대비 40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 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2018년 용도별 요금으로 대안1를 적용할 경우 주택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MJ)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주택용	3.0342	3.0342	2.0121	2.0121	3.0342	2.7843	3.0342	3.0342

(자료 : 정안회계법인 용도별 단가 대안 1)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대화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주택용 요금을 일치시켜 왔으며 2017년도까지 이러한 정책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목포도시가스와 해양도시가스만 인상요인이 있으며, 대화도시가스와 전남도시가스는 인하요인이 발생하나, 전남도시가스는 주택용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3개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 도의 경우 대부분 주택용 기본요금은 일치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요금은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용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려고 하면, 타 용도에 교차보조 문제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금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용도별 단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산정기준 제2조 제7항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013.06.05개정)’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철거비의 경우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가스 연결 시에는 관련 재료비와 안전점검 수수료

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용역시에는 이와 관련된 전입수 수료를 공급비용에 포함하여 총괄원가 및 단위당 공급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 상요인은 하기와 같이 분석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추정액이며 공급비용에 반영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출장비	시공비	열량(TJ)	단위당 공급비용 효과	
				출장비	출장비
목포	120,665	-	5,264	0.0229	-
대화	51,653	25,827	7,749	0.0067	0.0033
전남	79,091	65,909	11,533	0.0069	0.0057
해양	44,683	80,428	5,907	0.0076	0.0136
합계	<b>296,092</b>	<b>172,164</b>	<b>30,453</b>	<b>0.0097</b>	<b>0.0057</b>

공급기준 개정의 취지에 따라 과거부터 전입수수료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켰어야 하나 전라남 도의 주택용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유지비 등이 많이 발생하 면서 전입수수료를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사 다니는 빈도가 낮은 수요가에서는 해당 되지 않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지만, 전입 시 소비자 가 직접 호스를 교체한다던지 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급비용에 반영 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시도에서 전입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비용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위:원)

구분	시공비	출장비
서울	-	-
경기	16,587	-
인천	13,000	-
부산	10,553	6,687
대구	10,000	-
광주	9,000	-
대전	8,000	-
울산	12,000	-
세종	11,000	5,000
강원	7,500	5,625
충북	-	-

구분	시공비	출장비
충남	-	-
전북	4,000	5,000
전남	5,667	5,500
경북	-	-
경남	9,667	6,000
제주	5,000	5,000

#### 5.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5항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4개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센터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고객센터 수	1 개소	2개소	2개소	8개소
총 근무인원	48명	32명	57명	36명
수수료산정방식	건별표준비용	건별표준비용	총괄원가보상	건별표준비용
2017년 지급수수료	1,423,558	885,513	1,921,460	1,286,861
2018년 수수료반영액	1,596,649	1,031,716	2,361,149	1,486,088
인정공급열량(GJ)	5,264,043	7,749,000	11,533,170	5,907,466
공급비용반영액(원)	0.3033	0.1331	0.2047	0.2516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방식으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원가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서비스센터 원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나 각 사의 경우 해당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산출에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현행 체제에서 각 서비스항목별로 약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검토 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도시가스회사별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산출된 고객센터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 가. 시도별 시설분담금 적용기준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에 따른 일반시설분담금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명	일반시설분담금 적용단가
서울	22,490 원/m <sup>3</sup> ·hr
인천	22,267 원/m <sup>3</sup> ·hr
대전	22,500 원/m <sup>3</sup> ·hr
대구	22,730 원/m <sup>3</sup> ·hr
광주	26,732 원/m <sup>3</sup> ·hr
울산	26,496 원/m <sup>3</sup> ·hr
세종	26,458 원/m <sup>3</sup> ·hr
부산	22,169 원/m <sup>3</sup> ·hr
양산시	20,600 원/m <sup>3</sup> ·hr
경기도	23,161 원/m <sup>3</sup> ·hr
충청북도	25,339 원/m <sup>3</sup> ·hr
충청남도	26,458 원/m <sup>3</sup> ·hr
전라남도	29,797 원/m <sup>3</sup> ·hr
전라북도	22,000 원/m <sup>3</sup> ·hr
경상북도	27,780 원/m <sup>3</sup> ·hr
경상남도	20,600 원/m <sup>3</sup> ·hr
강원도	22,418 원/m <sup>3</sup> ·hr
제주도	등급별 규정

상기의 시도별 시설분담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남이 가장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분담금이 가구수의 밀집도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타시도와 같이 보급률을 높여 시설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 바입니다.

나. 단위당 공급비용

단위당 공급비용은 용도별로 개별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승인 대비 인상요인 및 인하요인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정액인상, 정률인상 및 정책적인 방법에 따라 용도별로 다르게 인상 및 인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인상 및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특정 용도에서 발생하였는지 추적하여 그 용도만을 인상, 인하 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어느 특정 용도의 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 인하되어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용도별 단가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목포도시가스의 대안 1의 경우처럼 인상요인이 발생 시 타지역에 비해 해당 용도별단가가 낮은 경우 타 용도별단가의 인상률보다 해당 용도별 단가를 추가로 인상시켜 가스사도 소비자도 부담없는 수준에서 용도별 단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산업용 요금제의 확대

산업용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급열량의 급격한 감소가 적고 실물 경기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비용 인하요인을 현행 산업용 부제에서는 요금부과 월 기준사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 효과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준 사용량을 더욱 세분화하여(2018년 대화도시가스 산업용 II 추가) 산업체 생산원가 절감, 요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체 요금체계를 현행 요금제에서 요금변동의 기여도를 고려한 '다부제 요금제'(사용량에 따라 체감요금을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 적용)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용 다부제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	
2 부제	8	광주, 대전, 참빛충북, 목포, 대화, 나주, 대성청정, 양산
3 부제	3	군산, 전북 ES, 지에스이
4 부제	3	전남, 서라벌, 경남
5 부제	5	부산, 강원, 참빛원주, 영남구미, 영남포항
6 부제	1	서해
10 부제	1	울산

## 7.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전라남도의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원도심이나 낙후 지역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지역도시가스사의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역도시가스사간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관투자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관 투자의 초기에는 1m당 공급받는 수요가 수와 공급량은 적지만 배관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공급비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의 증가가 수반되어 평균공급비용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용역시에는 투자재원을 가산하지 않았으나 대화도시가스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해양도시가스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도시가스사의 자체자금 및 조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관투자를 위하여 배관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가설하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관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시설분담금 증가나 투자재원을 통한 투자비 유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도시가스협회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 본 2017년 12월 말 기준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 현황에서 전라남도의 보급률은 47.2%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최하위 수준입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98.6	4,159,785	4,220,082	
인천광역시	91.9	1,092,226	1,188,917	
경기도	87.6	4,493,608	5,131,379	
수도권 소계	92.5	9,745,619	10,540,378	
부산광역시	89.9	1,319,756	1,467,555	
대구광역시	95.7	962,963	1,006,753	
광주광역시	99.3	588,515	592,818	
대전광역시	94.6	581,453	614,639	
울산광역시	93.2	427,149	458,547	
세종특별자치시	81.4	89,146	109,490	
강원도	45.3	317,565	700,265	
충청북도	65.3	452,222	692,140	
충청남도	64.5	595,864	923,499	
전라북도	66.9	533,541	797,916	
<b>전라남도</b>	<b>47.2</b>	<b>401,701</b>	<b>851,376</b>	
경상북도	62.1	741,523	1,193,261	
경상남도	68.5	963,437	1,406,011	
제주특별자치도	9.2	25,556	278,203	
지방 소계	72.1	8,000,391	11,092,473	
전국 합계	82.0	17,746,010	21,632,851	

(자료 : 도시가스협회)

전라남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넓고 서남해안 인근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미공급 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나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 지역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공급권역 확대는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나 보일러유(등유)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률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수요가의 시설분담금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인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공급 확대에 의한 요금인상은 기존 수요가와 신규 수요가 사이에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금이나 투자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격한 공급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비자의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9. 공급비용 결정 요인에 대한 사후 정산 실시

### 가. 감사원이 지적한 시도의 배관투자비 정산

감사원이 지적한 시도의 배관투자비 정산에 대해 2017년 용역시 2016년도 배관투자승인액과 2016년 배관투자실적치의 차이에 대해 정산하였습니다. 2018년도 용역시에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배관투자승인액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배관투자실적치의 차이에서 기 정산된 부분을 제외하여 총 5개년 배관투자비의 정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각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출내역 중 “정산”부분에 반영하여 2018년 용역시 공급비용에 반영하였습니다.

### 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 정산에 따른 요금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 해소 방안 제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2018년 3월 30일)됨에 따라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및 열량정산(1.5%차이시)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는 추정치가 실적치에 근접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정산금액은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요금이 안정화되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민원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첨 : 부속명세서

-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10,839,226	(256,286)	10,582,941	
급여	3,290,077	(92,562)	3,197,515	
퇴직급여	271,931	(5,721)	266,210	
감가상각비	2,961,337	(243,890)	2,717,447	
무형자산상각비	110,404	66,529	176,933	
복리후생비	355,491	(18,576)	336,915	
여비교통비	87,021	(223)	86,798	
차량유지비	87,172	(223)	86,949	
통신비	67,652	(2,471)	65,181	
수도광열비	74,829	(1,168)	73,661	
소모품비	220,084	(21,529)	198,555	
세금과공과	434,646	(2,949)	431,697	
지급임차료	56,594	(1,299)	55,295	
운반비	135,301	(345)	134,956	
수선비	341,931	(44,842)	297,089	
보험료	99,881	(112)	99,769	
접대비	50,046	(127)	49,919	
광고선전비	7,677	(18)	7,659	
교육훈련비	15,300	(1,886)	13,414	
도서인쇄비	59,448	(629)	58,819	
지급수수료	635,818	(4,911)	630,907	
고객센터수수료	1,475,984	120,665	1,596,649	
잡비	602	-	602	
(B) 영업외비용	11,158	-	11,158	
기부금	11,158	-	11,158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760,236	(24,029)	736,206	
(E) 적정원가	11,610,620	(280,315)	11,330,305	A+B-C+D

- 목포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4,091,738	(3,508,797)	10,582,941	
(B) 감가상각비	3,634,821	(740,441)	2,894,380	
(C) 퇴직급여	-	-	-	
(D) 대손상각등	-	-	-	
<b>(E) 운전자금</b>	<b>1,742,820</b>	<b>(461,393)</b>	<b>1,281,427</b>	(A-B-C-D)x2/12
(F) 유형자산	32,308,105	(617,076)	31,691,029	
(G) 무형자산	491,729	-	491,729	
(H) 임차보증금	39,889	-	39,889	
<b>(I) 요금기저</b>	<b>34,582,543</b>	<b>(1,078,469)</b>	<b>33,504,074</b>	E+F+G+H
(J) 적정투자보수율	8.09%	-	8.09%	
<b>(K) 적정투자보수</b>	<b>2,797,896</b>	<b>(87,253)</b>	<b>2,710,642</b>	Ix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988,900	-	1,988,900	
(B) 당기순이익누계	41,660,897	-	41,660,897	
(C) 배당금지급액누계	3,381,200	-	3,381,200	
<b>(D) 자기자본</b>	<b>40,268,597</b>	<b>-</b>	<b>40,268,597</b>	<b>A+B-C</b>
(E) 타인자본적수	56,059,140	-	56,059,140	
(F) 월평균잔액	4,671,595	-	4,671,595	E/12
<b>(G) 자기자본보수율</b>	<b>5.46%</b>	<b>-</b>	<b>5.46%</b>	
(H) 이자비용	113,450	-	113,450	
<b>(I) 타인자본보수율</b>	<b>1.91%</b>	<b>-</b>	<b>1.91%</b>	H/Fx(1-세후법인세율)
<b>(J) 가중평균보수율</b>	<b>5.09%</b>	<b>-</b>	<b>5.09%</b>	[(DxG)+(Fxi)]/(D+F)
<b>(K) 미공급지역가산율</b>	<b>3.00%</b>	<b>-</b>	<b>3.00%</b>	
<b>(L) 적정투자보수율</b>	<b>8.09%</b>	<b>-</b>	<b>8.09%</b>	J+K

-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7,543,729	(284,079)	7,259,650	
급여	3,658,234	(771,332)	2,886,902	
퇴직급여	255,216	-	255,216	
감가상각비	689,690	413,547	1,103,237	
무형자산상각비	-	-	-	
복리후생비	326,570	136,097	462,667	
여비교통비	5,855	(44)	5,811	
차량유지비	104,951	(782)	104,169	
통신비	47,790	(356)	47,434	
전력비	11,173	(83)	11,090	
소모품비	185,809	(25,609)	160,200	
세금과공과	248,125	(1,849)	246,276	
수선비	200,000	(62,400)	137,600	
보험료	23,510	(175)	23,335	
접대비	8,822	(66)	8,756	
경조비	2,193	(16)	2,177	
교육훈련비	3,458	(26)	3,432	
도서인쇄비	62,073	(463)	61,610	
지급수수료	690,188	(47,511)	642,677	
사무용품비	5,330	(39)	5,291	
대손상각비	57,473	(428)	57,045	
고객센터수수료	954,236	77,480	1,031,716	
잡비	3,030	(22)	3,008	
(B) 영업외비용	-	-	-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	-	-	
(E) 적정원가	130,691	(5,544)	125,147	A+B-C+D

- 대화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7,543,728	(284,079)	7,259,650	
(B) 감가상각비	1,302,748	(199,510)	1,103,237	
(C) 퇴직급여	396,178	-	396,178	
(D) 대손상각등	-	-	-	
<b>(E) 운전자금</b>	<b>974,134</b>	<b>(14,095)</b>	<b>960,039</b>	(A-B-C-D)x2/12
(F) 유형자산	9,311,489	(345,874)	8,965,615	
(G) 무형자산	-	-	-	
(H) 임차보증금	33,224	-	33,224	
<b>(I) 요금기저</b>	<b>10,318,847</b>	<b>(359,969)</b>	<b>9,958,878</b>	E+F+G+H
(J) 적정투자보수율	5.46%	-	5.46%	
<b>(K) 적정투자보수</b>	<b>563,357</b>	<b>(19,652)</b>	<b>543,705</b>	Ix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800,000	-	1,800,000	
(B) 당기순이익누계	51,615,496	-	51,615,496	
(C) 배당금지금액누계	31,710,416	-	31,710,416	
(D) 자기자본	21,705,080	-	21,705,080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b>(G) 자기자본보수율</b>	<b>5.46%</b>	<b>-</b>	<b>5.46%</b>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	-	-	H/Fx(1-세후법인세율)
<b>(J) 가중평균보수율</b>	<b>5.46%</b>	<b>-</b>	<b>5.46%</b>	[(DxG)+(FxI)]/(D+F)
(K) 미공급지역가산율	-	-	-	
<b>(L) 적정투자보수율</b>	<b>5.46%</b>	<b>-</b>	<b>5.46%</b>	J+K

-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22,141,285	(2,734,949)	19,406,336	
급여	5,676,597	(591,079)	5,085,518	
퇴직급여	533,231	(130,288)	402,943	
감가상각비	4,146,359	(137,201)	4,009,158	
무형자산상각비	90,713	-	90,713	
복리후생비	1,401,682	(72,829)	1,328,852	
여비교통비	110,205	(29,855)	80,351	
차량유지비	186,230	(34,050)	152,179	
통신비	367,688	(61,314)	306,374	
수도광열비	120,830	(449)	120,382	
소모품비	243,141	(140,913)	102,228	
세금과공과	454,952	(88,663)	366,289	
지급임차료	177,062	(709)	176,353	
수선비	1,274,773	(420,741)	854,032	
보험료	58,043	(7,322)	50,721	
접대비	140,897	(52,232)	88,665	
회의비	35,239	(16,539)	18,700	
광고선전비	20,730	(12)	20,718	
교육훈련비	79,543	(41,121)	38,421	
도서인쇄비	61,735	(45,824)	15,911	
지급수수료	3,640,916	(698,456)	2,942,460	
고객센터수수료	2,361,149	-	2,361,149	
용구손료	882,727	(158,200)	724,527	
대손상각비	44,603	-	44,603	
잡비	32,240	(7,150)	25,090	
(B) 영업외비용	230,000	(74,000)	156,000	
기부금	230,000	(74,000)	156,000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1,054,104	(54,203)	999,901	
(E) 적정원가	23,425,389	(2,863,152)	20,562,237	A+B-C+D

- 전남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22,141,285	(2,841,285)	19,300,000	
(B) 감가상각비	4,146,359	(137,201)	4,009,158	
(C) 퇴직급여	116,611	-	116,611	
(D) 대손상각등	135,316	-	135,316	
<b>(E) 운전자금</b>	<b>2,957,167</b>	<b>(450,681)</b>	<b>2,506,486</b>	(A-B-C-D)x2/12
(F) 유형자산	43,375,012	(1,934,565)	41,440,446	
(G) 무형자산	204,683	-	204,683	
(H) 임차보증금	403,210	-	403,210	
<b>(I) 요금기저</b>	<b>46,940,071</b>	<b>(2,385,246)</b>	<b>44,554,825</b>	E+F+G
(J) 적정투자보수율	8.18%	-	8.18%	
<b>(K) 적정투자보수</b>	<b>3,838,826</b>	<b>(195,069)</b>	<b>3,643,757</b>	IX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2,684,000	-	12,684,000	
(B) 당기순이익누계	80,598,461	-	80,598,461	
(C) 배당금지금액누계	45,432,158	-	45,432,158	
(D) 자기자본	47,850,303	-	47,850,303	A+B-C
(E) 타인자본적수	46,138,783	-	46,138,783	
(F) 월평균잔액	3,844,899	-	3,844,899	E/12
<b>(G) 자기자본보수율</b>	<b>5.46%</b>	<b>-</b>	<b>5.46%</b>	
(H) 이자비용	82,165	-	82,165	
<b>(I) 타인자본보수율</b>	<b>1.68%</b>	<b>-</b>	<b>1.68%</b>	H/Fx(1-세후법인세율)
<b>(J) 가중평균보수율</b>	<b>5.18%</b>	<b>-</b>	<b>5.18%</b>	[(DxG)+(Fxi)]/(D+F)
<b>(K) 미공금지역가산율</b>	<b>3.00%</b>	<b>-</b>	<b>3.00%</b>	
<b>(L) 적정투자보수율</b>	<b>8.18%</b>	<b>-</b>	<b>8.18%</b>	J+K

- 해양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10,402,189	(553,237)	9,848,952	
급여	2,365,753	(55,906)	2,309,847	
퇴직급여	239,750	(13,488)	226,262	
감가상각비	3,288,670	15,155	3,303,825	
무형자산상각비	107,541	(8,305)	99,236	
복리후생비	467,629	(20,326)	447,303	
여비교통비	79,179	(10,747)	68,432	
차량유지비	215,666	(4,855)	210,811	
통신비	99,434	(7,727)	91,707	
수도광열비	18,400	(5,066)	13,334	
소모품비	23,121	(2,967)	20,154	
세금과공과	334,915	(26,980)	307,935	
지급임차료	50,352	(5,418)	44,934	
보험료	9,277	(3,232)	6,045	
광고선전비	39,218	(10,719)	28,499	
교육훈련비	15,609	(9)	15,600	
지급수수료	1,066,155	(102,552)	963,603	
고객센터수수료	1,739,188	(253,100)	1,486,088	
자재비	242,332	(36,996)	205,336	
(B) 영업외비용	88,852	-	88,852	
기부금	88,852	-	88,852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1,170,666	(15,074)	1,155,593	
(E) 적정원가	<b>11,661,708</b>	<b>(568,311)</b>	<b>11,093,397</b>	A+B-C+D

- 해양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0,402,189	(553,236)	9,848,953	
(B) 감가상각비	3,396,211	6,850	3,403,061	
(C) 퇴직급여	-	-	-	
(D) 대손상각등	-	-	-	
<b>(E) 운전자금</b>	<b>1,167,663</b>	<b>(93,348)</b>	<b>1,074,315</b>	(A-B-C-D)x2/12
(F) 유형자산	47,724,677	(509,341)	47,215,336	
(G) 무형자산	334,185	(29,065)	305,120	
(H) 임차보증금	113,800	-	113,800	
<b>(I) 요금기저</b>	<b>49,340,325</b>	<b>(631,755)</b>	<b>48,708,571</b>	E+F+G
(J) 적정투자보수율	8.46%	-	8.46%	
<b>(K) 적정투자보수</b>	<b>4,173,945</b>	<b>(53,443)</b>	<b>4,120,501</b>	IX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3,066,667	-	3,066,667	
(B) 당기순이익누계	266,625,636	-	266,625,636	
(C) 배당금지금액누계	157,890,000	-	157,890,000	
(D) 자기자본	111,802,303	-	111,802,303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b>(G) 자기자본보수율</b>	<b>5.46%</b>	<b>-</b>	<b>5.46%</b>	
(H) 이자비용	-	-	-	
<b>(I) 타인자본보수율</b>	<b>-</b>	<b>-</b>	<b>-</b>	H/Fx(1-세후법인세율)
<b>(J) 가중평균보수율</b>	<b>5.46%</b>	<b>-</b>	<b>5.46%</b>	[(DxG)+(FxI)]/(D+F)
(K) 미공급지역가산율	3.00%	-	3.00%	
<b>(L) 적정투자보수율</b>	<b>8.46%</b>	<b>-</b>	<b>8.46%</b>	J+K